지구별 수협서 관리대행

항내질서 악화우려

**물양장·부지에는
어구보관용 천막, 어구등 방치행위,
수역에는 폐선 방치, 활어보관용 가두리 설치,
도서 지역 여객선용 부잔교등이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재양
〈수산청시설과장〉

최근 어항이 어선 대피 장소의 단순 개념에서 어촌 중심지역할의 복합적 기능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어항 배후지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해양오염물질 유출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항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어항관리를 과연 누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어항관리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전달코저 한다.

첫번째로 어항개발 계획과 어항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두번째로 어항시설 사용실태 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번째로 이에 대한 대책순으로 기술코저 한다.

어항 개발 계획과 시설 현황

정부는 수산청 관리 1·3종 83개 어항과 시·도 관리 2종 316개 어항을 지정 개발하고 있으며 1·3종 어항의 개발 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이러한 투자로 완공된 시설 현황은 '91.12.31 현재 외곽시설인 방파제 22,900m,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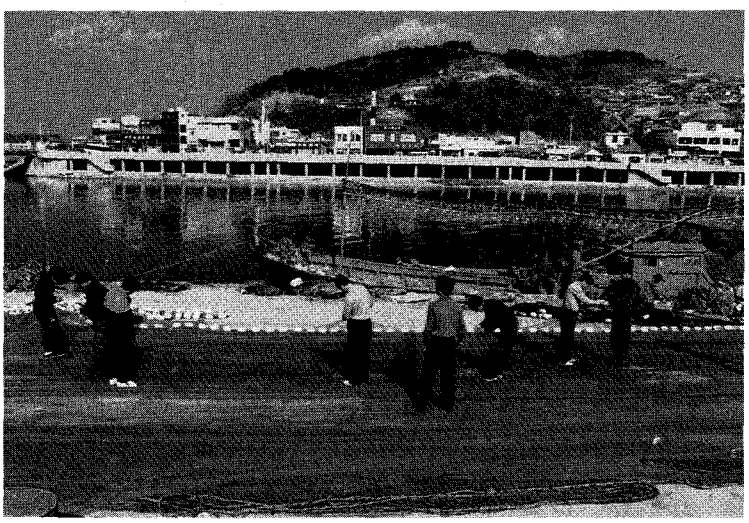

사제 1,900m, 호안 3,500m, 파제제 900m, 도류제 130m가 있으며 계류시설로서는 물양장 14,000m, 선착장 1,000m, 선양장 100m, 돌제 90m가 있다. 그리고 어업 활동에 필요한 기능시설은 위판장 37개소, 급유·급수시설 45개소, 제빙, 냉동공장 17개소, 공동창고 15개소, 어선 수리소 25개소가 있으며 관리 대상 시설로는 별표 2와 같다.

〈어항의 기능〉

어항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태·폭풍등 자연 재해로부터 어선과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기능, 바다에서 생산 또는 어획한 수산물을 양륙·판매하는 1차 유통장소로서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공급과 소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유통기능, 어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어선의 정박과 어구·유류·얼음등의 어업자재 보급과 출어준비등 보급기능, 낙도·벽지의 교통 연결항으로서 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중심지 역할과 관광지 역할을 하는 교통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어항 관리 체계〉

1·3종 어항의 관리를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시·도지사(시장·군수)를 어항관리 감독자로 지정하고 어민의 대표 기관이며 어항을 직접 이용하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장을 어항관리 대행자로 지정하여 어항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

어항 시설 사용 실태

막대한 국고를 들여 시설한 방파제등 외곽시설과 물양장등 접안시설 및 부지에 대한 어항시설의 관리와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해 수산청·어항 사무소, 시·도(시·군),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허가 시설의 적정사용 여부, 어항 시설의 무단점유 및 폐선등 어선항해 장애물의 방치 여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폐유 간이저장시설 및 유류 유출사고시의 방재자재 확보상황, 어항시설 훼손상황, 어항구역내 대청소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어항내 수질 정화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항내 질서는 전년도 보다 악화되는 등 어항구역내 금지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위반사항의 예를 들자면 물양장·부지에는 어구보관용 천막, 어구등 방치행위, 수역에는 폐선 방치, 활어보관용 가두리 설치, 도서 지역 여객선용 부잔교등이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항 시설 수가 늘어남에 따른 이용 어선수와 양륙 어획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어민과 이용자의 질서의식 결여와 이기주의가 팽배

둘째,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행 어항법상 처벌 및 강제집행 규정이 전무하고 수산시설 관리규정상 관리위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유재산법·건축법·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 및 원상회복등 강제이행 조치가 곤란

셋째, 금지행위의 단속, 무단점유물 철거등 현장관리 업무를 중앙 또는 어항 사무소에서 관장할 인력이 부족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 및 단속이 곤란한 실정이다.

어항현장 관리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책으로, '93년도에는 어항내 유입되는 오·폐물과 부유물 수거를 위해 어항 청소선 1척을 건조하고, 어항 구역내 금지 행위 단속을 위한 어항 감시원(청원 경찰) 1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어항 관리 대책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매년 어항시설 사용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하고, '91년 6월 동·서·남해에 어항 사무소를 신설하였고, '91년 11월에는 어항시설 관리지침을 시달하여

어항관리 관계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어항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토의 개선토록 하였다. '92년 6월에는 어항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어민 및 이용자의 어항관리에 대한 의식을 제고코저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청장 친서를 발송하고 포스터와 표어를 제작 어민이 많이 이용하는 어선출입항신고소, 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 위판장, 급유시설 등에 부착하는등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어항관리에 미흡한 바가 있어 금후 어항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행정 지도 대책으로서

○ 무단점유 및 장애물 방치 등에 대해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미이행시는 고발 또는 행정대집행 조치를 하되 어민의 편익 및 공익을 위한 시설은 적법하게 사용토록 조치하고

○ 어항시설 사용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위반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 어항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신문·전문지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어항입구에 어항 안내판을 제작·설치하는등 어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 시·도(시·군)관계 공무원 및 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어항관리 관계관 협의회를 매 분기별 운영하고 어항 시설 사용실태 점검시 관리가 우수한 어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별표 1) 1·3종 어항개발 계획

(단위 : km, 억원)

총 계 획		'91 까 지		'92 추 진		잔 량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96	9,777	61	3,842	3	471	33	5,454

별표 2) 관리대상 어항시설('91.12.31 현재)

구 분	어 항 부 지		건 물		공 작 물		항내수면적
	수 량	규 모	수 량	규 모	수 량	규 모	
계(83개항)	225필지	303,720평	33동	10,608평	253식	44,112m	17,757,568㎡
1 종 (50)	161	196,928	25	9,753	184	26,406	8,563,767
3 종 (33)	64	106,792	8	855	69	17,706	9,193,801

둘째, 제도 개선 대책으로는

○ '92년 정기국회에 상정된 어항법 개정(안)에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및 대집행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 어선법 개정(안)에 연안 및 항내에 방치 또는 투기되는 폐선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처리토록 반영하였다.

셋째, 어항현장 관리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책으로

○ '93년도에 어항내 유입되는 오·폐물과 부유물 수거를 위해 어항 청소선 1척을 건조하고

○ 어항 구역내 금지 행위 단속을 위한 어항 감시원(청원경찰)1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항기능 활성화를 위해 기능시설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늘리고 어항개발 계획 수립시에는 어민의 의견을 시설계획에 반영하며 시설계획 확정 전에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등을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어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즉시 시설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어항부지에 어항기능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등에서 시설코저 사용허가 신청시는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어항시설의 관리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방침을 기술하였으나 정부의 의지로만 효율적인 어항관리를 도모할 수 없으며, 어항을 이용하는 어민과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식을 같이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지적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 진정 어항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고 어촌의 중심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